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405788 계약이행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조용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4



항 기재 뉴스 검색 서비스를 이행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위 뉴스 검색 서비스의 노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라는 명칭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2)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제휴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고의 뉴스정보 등을 B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B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휴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휴계약을 연장해왔는데, 2020. 3.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휴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3. 31.경 체결된 이 사건 제휴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1 이 사건 제휴약관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다.

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의 적용



1)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2015. 10.경 발족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E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위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제휴심사, 재평가, 관련 조치의 권고 등에 따라 언론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등의 연장이나 해지, 언론매체에 대한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해오고 있다.

2) 2020. 2. 14. 일부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심사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2 이 사건 심사규정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제재 및 재평가

1)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유형의 기사를 4회 송고하였고, 같은 달 22일 피고로부터 그 시정조치를 요청받았다.

2) 원고는 2018. 3. 23.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유형의 기사를 3회 송고하였고, 2018. 3. 30.부터 2018. 7. 4.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그 시정조치를 요청받았다.

3) 원고는 2019. 10. 25.부터 2019. 11.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나)호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유형의 기사를 5회, 같은 항 (라)호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유형의 기사를 24회 송고하였다(이하 해당 송고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송고행위'라 한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10. 25.부터 2019. 11. 22.까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1항 (가)호 (ㄱ)목에 따



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심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9. 11. 28.경 이 사건 위원회의 2019. 11. 25.자 시정요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소명자료 검토 결과 2019. 12. 13. 원고에 대한 기존의 부과벌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7일 해당 결정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재평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8. 24. 다시 이 사건 송고행위를 이유로 누적벌점이 6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원고가 재평가 대상이 되었음을 안내하면서 2020. 9. 6. 23:59까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와 매체소개서, 자체기사 리스트 등 재평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위원회에 재평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심사규정 제10조 제3항 (가)호에 따른 뉴스검색제휴 업체의 최소점수인 60점에 못 미치는 점수(55.89점)를 획득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11.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계약의 해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휴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은 2020. 11. 13. 해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해당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은 언론사에게 이 사건 심사규정의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정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사전 통지나 항변 기회의 보장 없이 이 사건 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제휴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언론사의 불복 기회도 박탈시키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9조 제2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호(법률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 제1호(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호(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 제4항, 제5항은 이 사건 위원회의 제휴계약 해지, 이 사건 심사규정의 개정 등에 따른 제휴계약의 변경, 이 사건 심사규정의 이 사건 제휴 약관에 대한 우선 적용에 대하여 원고 등 언론사의 동의를 의제한다. 이는 약관법 제12조 제1호 본문(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제휴약관의 위 조항들은 피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 남용을 통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



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 절차는 이 사건 위원회가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언론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에게 재평가 심사결과 통지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한 언론사의 불복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심사절차가 불공정한 점, 채점 방법이 불분명하고 배점기준·심사대상 기간 및 기산점도 없으며 심사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심사내역도 통지하지 않는 등 심사기준·과정이 자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제휴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휴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뉴스 검색 서비스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피고의 부적법한 이 사건 해지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제휴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수입 감소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금 중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약관법 제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이 약관법 제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심사규정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을 통해 이 사건 제휴계약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 사건 심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위원회의 벌점 부과, 재평가 및 제휴계약 해지는 그 성격이 제휴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심사규정은 제15조 제1항 <별표7>과 제16조 제1항 <별표8>에서 부정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로 정의하면서 그 유형을 정하고, 각 부정행위의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벌점을 차등 부과하며 벌점에 비례하여 강화되는 조치들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11조 제2항 (가)호에서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를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항 (다)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서 재평가 결과 일정한 최소점수 이상을 받아 통과하지 못한 경우야 비로소 이 사건 위원회가 피고에게 제휴계약 해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비교할 때 위 '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위원회의 벌점 부과, 재평가 및 제휴계약 해지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휴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544조 본문의 일반적인 계약해지보다 더 까다롭다.

다) 이 사건 제휴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휴계약 해지 절차는 제휴계약이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제휴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해지)와 달리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¹⁾

라)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에 따라 누적별점이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 등 언론사는 시정 요청, 경고처분 등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통해 스스로 시정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별점이 추가로 누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의 조치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최고에 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이러한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의 절차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심사규정의 적용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완화한다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이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1)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4항 (다)호의 적용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어서 원고 등 언론사의 법률상 항변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고,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도 아니다. 설령 이행최고, 사전통지, 소명자료 제출기회 보장,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기회 보장을 법률상 항변권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이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심사규정은 벌점이 누적되는 동안의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원고 등 조치 대상 언론사로 하여금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기회를 스스로 갖게 함으로써 이행최고에 준하는 조치를 구비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 전에 수회에 걸친 시정조치 요청 등을 통하여 이행최고에 준하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평가 대상에게 재평가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고, 재평가 대상인 언론사는 이 사건 위원회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향후 운영 계획 등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평가 사유 고지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소명자료 제출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재량권의 주체는 이 사건 위원회나 피고가 아니라 재평가 대상인 원고 등 언론사이므로, 위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평가 대상 언론사의 소명자료 제출 권한이 배제·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재평가 예정 및 그 사유를 고지받았고, 소명자료의 제출기회도 보장받았다.

라) 이 사건 심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언론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재평가 사유의 고지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 보장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조치 대상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마) 이 사건 심사규정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조치 등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은 피고와 언론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심사규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의견·권고 등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준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고 등 언론사의 불복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상대방인 피고의 불복기회도 박탈된다는 점, 언론사와 피고 사이의 제휴계약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사경제주체 간의 사적 계약이고 이 사건 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일종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반드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과 상대방의 준수에 대하여 불복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사적계약에서 일방의 계속적 계약 해지에 대해 불복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 등 언론사로서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률상 권리를 박탈·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 제4항, 제5항이 약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약관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은 피고와 원고 등 언론사로 하여금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준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고, 제15조 제4항은 이 사건 심사규정이 개정된 경



우 개정된 심사규정의 적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5항은 이 사건 심사규정의 이 사건 제휴약관에 대한 우선 적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의견·권고와 상대방의 준수에 대한 동의, 심사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심사규정의 우선 적용에 대하여 원고 등 언론사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원회의 요청·의견·권고와 상대방의 준수에 대한 동의는 근본적으로 원고 등 언론사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심사규정의 적용 및 준수에 스스로 동의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위원회와 상대방의 작위가 있을 경우야 비로소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이 사건 제15조 제4항이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심사규정의 이 사건 제휴약관에 대한 우선 적용도 원고 등 언론사가 그러한 우선적용에 동의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과 이 사건 제휴약관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약관법에 따른 무효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휴약관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



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심사규정상 재평가 및 제휴계약 해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제휴계약 해지를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보다 더 까다롭게 정하고 있고, 별점부과부터 재평가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행최고에 준하는 시정기회 보장, 재평가 사유의 고지, 소명자료 제출기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해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시정기회와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보장받았고, 재평가 사유도 고지받았다. 이 사건 제휴약관의 위 조항들에 따른 재평가 및 제휴계약 해지 절차는 합리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사규정 <별표 7>은 부정행위를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



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로 유형화하고 있고, 유형별로도 세세한 정의 규정을 두면서 추가적인 유형화도 하고 있는바,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기준에 관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 후술하듯이 별점 누적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절차는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거나, 평가기준이 현저하게 불명확하다거나 그에 따른 판단이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심사규정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권고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 역시 피고에게 불리한 재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원고 등 언론사는 재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으므로, 앞서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휴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 등 언론사에 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을 제3, 4,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와 주식회사 E가 뉴스제휴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F협회, G협회, H, I학회, J협회, K협회, L협회, M연합, N협회, O협회, P센터, Q연맹 등 15개 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외부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제휴 심사와 관련한 기준·절차 제정 및 그에 따른 평가 진행 업무를 맡았다. 이처럼 이 사건 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피고와 주식회사 E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들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사규정은 제2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위원회에게 뉴스제휴 및 심사와 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10조에서 재평가를 위한 평가팀의 구성방법, 평가항목, 뉴스제휴를 위한 최소 점수 기준, 최종 평가점수의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사규정이 이 사건 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재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보더라도, 이 사건 심사규정은 <별표 5> 정량평가, <별표 6>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점수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그 중 정성평가의 항목도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



도의 전문성 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²⁾이나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위반 사유나 정도, 횟수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³⁾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하게 불명확하다거나 주관적·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절차는 원고 등 언론사에게 별점 누적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재평가 과정에서 재평가 사유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심사규정이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2)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3)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원고 등 언론사의 권리를 박탈·제한하는 경우로서 원고 등 언론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위원회의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언론사들 중 탈락하지 않고 재평가를 통과하거나 제휴 유형의 변경으로 종결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점,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소명자료 검토 후 별점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의 판단이 자의적·주관적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심사규정은 제3조 제7항에서 누적별점의 계산기간을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8> 제재기준에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별점의 부과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5. 별점과 제재에서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기존의 누적 별점이 삭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체적인 신상, 재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점수 부여 및 산정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가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보인다.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를 통한 제휴계약의 해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적 주체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지인바, 이러한 계약해지 절차에 관하여 국가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평가정보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다.

마. 소결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심사규정의 재평가 및 그에 따른 제휴계약 해지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8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영일

판사 이형철



[별지]

목록

1. 뉴스정보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출처정보’의 모든 뉴스자료를 의미하며 ‘출처정보’에서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기사를 의미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피고 뉴스검색제휴 약관 제1조 제1호]
2. 출처정보 : ‘뉴스정보’가 속하거나 게시되어 있던 근거로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거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뉴스정보의 출처(인터넷 사이트에 한하지 않음)를 의미하며, 원문, URL 등을 포함한 형태로 제공됨. 즉 뉴스정보가 속하거나 게시되어 있던 근거를 말함 [피고 뉴스검색제휴 약관 제1조 제2호]
3. 정보 : 뉴스정보와 출처정보의 총칭 [피고 뉴스검색제휴 약관 제2조 제3호]
4. 뉴스 검색 서비스 : 피고가, “1) ‘’의 홈페이지, 2) ‘’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3) Device 종류와 상관없이 ‘’가 운영하는 모바일, 스마트 TV 등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내에서 원고의 출처정보를 검색결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피고가 원고의 출처정보를 단순히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검색결과 중 ‘뉴스’ 탭에 원고의 출처정보를 분류하는 것을 포함함 [피고 뉴스검색제휴약관 제2조, 제1조 제4호]



[별지1]

이 사건 제휴약관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B 주식회사(이하 “B”)가 제공자의 제공 정보를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B 서비스의 검색 결과 및 관련 B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노출함에 있어 B와 제공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5. “제공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B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언론을 말하며, 이하 동일)를 말합니다.
8. “D위원회”라 함은 B 뉴스검색에 대한 D를 수행하며, B와 E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독립적 협의체를 말합니다.

제14조(계약해제, 해지 등)

- ① B 및/또는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전자우편 포함)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 약관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상대방의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4. 상대방이 이 약관위반으로 인한 시정 통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15조 (D위원회)

- ① B와 제공자는 첨부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B와 제공자는 심사규정 및 심사규정에 따른 D위원회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이하 심사규정 및 심사규정에 따른 D위원회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총칭하여 “D위원회 의견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D위원회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B는 D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제공자에게 심사규정에서 정한 벌점 및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계약 종료 후 D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B와 제공자는 이 계약기간 중 D위원회가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이 약관에 첨부된 심사규정을 개정된 심사규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D위원회에 의하여 심사규정이 개정될 경우, 심사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종전 심사규정상의 제휴기준 및 제재요건 등에 해당되었던 사실과 그 횟수 등은 개정 심사규정의 제휴기준 및 제재요건 등에 따른 효과 산정 시에도 그대로 산입됩니다.
- ⑤ 이 약관의 내용과 심사규정의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지2]

이 사건 심사규정의 주요내용

본 규정은 D위원회(이하 ‘D위’)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며, ‘B’와 ‘E’ 양사를 지칭할 때는 ‘포털사’라 한다)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포털사’의 뉴스 제휴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뉴스 제휴 및 제재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포털사’의 뉴스 제휴 매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평가 등 제반 사항. 대상 및 평가 절차, 평가 방식,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된다.

(나) ‘포털사’ 제휴 매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반 사항. 부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조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식 등이 포함된다.

제2조(운영원칙)

③ ‘D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제휴매체’는 ‘뉴스검색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말한다.
- ② ‘뉴스검색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포털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⑥ ‘제2소위’란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 ⑦ ‘누적벌점’이란 ‘제휴매체’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십이(12)개월 동안(이하 ‘누적벌점 계산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의 총합을 의미한다.

제10조

- ① ‘D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D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 ②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20% 정성평가에 80% 배점이 되도록 한다.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5>에 따르고,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6>에 따른다.
-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④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로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⑤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요소, 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는 제외)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으로 한다.

제11조(재평가 대상 및 방법)

- ① 재평가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② 재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누적벌점’ 이 육(6)점 이상인 경우
- ④ ‘포털사’ 는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 에 재평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해당 ‘제휴매체’ 는 ‘D위’ 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운영 계획 등 ‘제휴매체’ 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부정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제16조(‘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 ①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D위가 B, E에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세 규정은 <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시정요청
 - (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ㄴ) 위 경우 <별표 8>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 (나) 경고처분
 - (ㄱ) ‘제휴매체’ 의 ‘누적벌금’ 이 2점 이상에 이른 경우
 - (다)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노출 중단
 - (ㄱ) 본 규정 <별표 8> 5. 벌점과 제재에 따라 ‘제휴매체’ 의 ‘누적벌점’ 이 4의 배수에 이른 경우
 - (라) 계약해지
 - (ㄱ) ‘접속불량’ 중 악성코드가 탐지되어 ‘포털사’ 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ㄴ) ‘접속불량’ 중 데드링크 상태가 발생하여 ‘포털사’ 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③ ‘D위’ 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휴매체’ 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2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D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사’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

(가) ‘제휴매체’가 ‘포털사’에 전송한 월간 기사 송고량이 <별표 1>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하여 ‘포털사’가 ‘D위’에 관련 근거를 제출한 경우

(나) ‘포털사’가 ‘제휴매체’와 ‘포털사’ 간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포털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포털사’가 ‘D위’에 관련 근거를 제출한 경우

(다) ‘제휴매체’가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17조(의견청취)

‘D위’는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제휴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제재 심의 의결 절차)

본 규정에 의한 ‘D위’의 회의는 ‘B-E ‘D위’ 위원 회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제휴매체’에 제16조 제1항 (나) 내지 (라)호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제2소위’ 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로 정한다.

<별표 5>정량평가

구분	점수	항목	내용
제휴 통과 기준	통과 시 기본점수 15점 부여	기사 생산량	· 매체 발행 주기별로 기사량 충족 요건 - 일간지 월 200건 이상 - 주간지 월 50건 이상 - 월간지 월 20건 이상 - 인터넷신문 월 100건 이상 - 전문지 월 20건 이상 - 방송사 월 200건 이상
		자체 기사량	<자체기사비율> - 일간지 및 방송사, 인터넷신문 30% 이상 - 주간지 40% 이상 - 월간지 및 전문지 50% 이상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본 매체의 기사도 자체기사에 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8

			함 <자체기사 세부 정의> · 자체기사는 아래의 2가지로 정의한다. -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 -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 타매체 기사 -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 · 위 요건을 갖춰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사 작성자의 실명이나 필명(byline)이 적시되지 않은 무기명기사와 ‘뉴스팀’, ‘편집팀’, ‘온라인뉴스팀’ 같은 형태로 기사를 특정하지 않은 기사 - TV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단순히 그 내용을 전하는 기사(단, 사실여부확인이나 파장 소개 등 추가취지를 한 경우 또는 사전 TV 프로그램 소개나 사후 비평은 자체기사로 인정) - 단순한 인사·동정·부고 기사나 행사소개 기사 - 언론사의 자사 홍보기사 -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기자의 객관적 보도가 빠진 단순한 행사 소개 동영상 - 사진기사 가운데 동일 소재를, 동일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한 건으로만 인정(단, 기사의 맥락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통과 시 기본점수 5점 부여	윤리적 실천의지	1)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자율적 규제 제도를 마련해 이를 공표하고 실천하는지, 또는 2)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하는지

<별표 6> 정성평가

구분	점수	항목	내용
저널리즘 품질요소	40점	사회적 가치성 (10점)	·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이슈를 보도하는지 ·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 설립 이후 보도 활동과 성과는 어떠한지(수상 실적, 사회적 공헌 등)
		보도의	· 기사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8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15점)	- 악의적으로 편향성을 띠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 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 기사의 출처와 취재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지 - 기사에 나오는 사실과 자료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는지 - 제목과 기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 오탈자 등 기사의 형식적 흠결 여부
		보도의 전문성 (10점)	- 기사의 전문성 - 독자적으로 취재, 생산하는 기획성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 기사의 내용이 충분히 깊이가 있는지 - 보도분야의 전문성 - 매체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뉴스 내용의 전문성이 충분한지 - 해당 분야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기사를 제공하는지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 (5점)	- 전체 기자 수 대비 전체 기사 생산량이 적절한지 - 기자 1인당 자체 기사 비율은 적절한지 - 보도분야 범위 대비 취재기자수가 적절한지
윤리적 요소	30점	기사윤리 (10점)	-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편집, 배열하는지 -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내용을 포함하는지 -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 의료, 부동산, 주식, 식품 등에 관한 광고나 기사를 게재할 때 유해 가능성, 허위과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지 -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비방 비하 표현이 있는지
		광고윤리 (10점)	-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요소가 있는지 - 신뢰성이 훼손된 링크(이용자의 의도와 달리 상업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사례 등)가 있는지 - 광고주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 등 비정상적인 광고가 존재하는지
		선정성 (10점)	-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강조하는지 - 잔혹하거나 음란한 내용 혹은 이미지를 보도하거나 광고하는지 - 범죄와 재난 보도 과정에서 관련된 피해자 및 당사자의 감정이나 피해 가능성을 배려하는지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광고하는지 - 범죄 수법이나 자살 방법 등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는지
이용자 요소	10점	<형식적 요소> - 텍스트 이외에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기사의 입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혁신에 노력하는지 <기술적 요소> ·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 맞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 기사를 열람할 때 물리적인 불편함이 없고 가독성이 높은지 <사회적 요소> · 건전한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는지 · 기타 높이 평가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	--	--

<별표 7> 부정행위의 유형

2.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① 트래픽 유입을 목적으로 추천 검색어나 자극적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삽입하여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 (ㄱ) 배경과 같은 색깔을 써서 보이지 않게 삽입한 경우
 - (ㄴ) 추천 검색어를 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연속,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포함하는 경우
 - (ㄷ) 추천 검색어 관련하여 유사한 기사를 반복해서 전송하는 경우
 - (ㄹ) 추천 검색어가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되었으나 전체 기사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경우
 - (ㄴ) 추천 검색어 관련 기사를 과도하게 나눠 전송하는 경우

4.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①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아래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ㄱ)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ㄴ)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ㄷ)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 광고성 키워드·동영상·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 ② 링크 신뢰성 훼손: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결과가 이용자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상업적 목적이 큰 콘텐츠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 (ㄱ) 링크 클릭했을 때 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여진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 (ㄴ) 기사 제목 또는 본문 안에 기사와 무관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 ③ 가독성 훼손 광고 전송: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제휴매체 페이지로 이동 후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별표 8> 제재기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8

2.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1일 기사 송고량 기준)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비율	벌점	비고
1%이상 5%미만	1점	1일(24시간) 기준
5%이상 10%미만	2점	1일(24시간) 기준
10%이상 15%미만	3점	1일(24시간) 기준
15%이상 20%미만	4점	1일(24시간) 기준
20%이상 25%미만	5점	1일(24시간) 기준
25% 이상	10점	1일(24시간) 기준

4. 타 부정행위벌 벌점

부정행위 유형	벌점	비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	1점	부정행위 유형에 관계 없이 각기 다른 부정행위 5건 누적시 1점 부과

5. 벌점과 제재

- ‘누적벌점’ 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기존 누적 점수는 삭제되고, 영(0)점부터 다시금 누적된다.
- ‘D위’ 는 본 규정 제12조에 명기된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위한 평가 작업을 매월 일(1)회 실시한다.

누적벌점	제재	비고
2점 미만	시정 요청	-
2점 이상	경고 처분	-
4점 이상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
6점 이상	재평가	
8점 이상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
10점 이상	재평가	이후 추가 벌점 누적 시 2점 단위로 노출 중단(24시간씩 추가)과 재평가 반복

끝.